

## 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「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8월 1일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

### 1. 사업 개요

- (목적)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·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
- (모집규모) 300개 기업 내외
  - \* 23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선정 제외
- (지원비용) 국내 제조기업(최대 150만원), 제조 외 기업(최대 100만원)
  - \*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%는 기업 부담
- (접수기간) '23. 8. 1.(화) ~ '23. 8. 14.(월)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
  -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
  - 동일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(대표자·주소지 동일 등) 1개 업체만 지원
- (사업내용) 어린이제품 시험·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(바우처) 지원

## 2. 지원요건 및 내용

- (지원요건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### 신청 제외 대상

- ◆ 국세·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
- ◆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※ 신청기업은 관리원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여부를 문의받거나, 관련 증빙 서류 제출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
- (지원내용)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

지원구분	세부내용
시험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험비용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성·정량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</li> <li>- 지속적 소비자 수요가 있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갱신(연장) 제품에 대한 시험비용 지원 우대</li> <li>-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업 우대</li> </ul> </li> <li>※ 신청항목 및 목적으로 1차 시험진행 후 잔여액 발생 시 그 외 항목으로 사용 가능(단, 어린이제품 품목에 대한 시험 가능)</li> </ul>

\* (예시1) 완구 신청 기업은 완구 품목에 대해 시험비용을 먼저 사용 후, 잔여액 발생시 완구 외 어린이제품에도 시험비용 사용 가능

(예시2)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연장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비용으로 먼저 사용 후, 잔여액 발생 시 신규 어린이제품 시험비용으로 사용 가능

- (지원방법) 선정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\*에 '선정공문'을 제출하여 시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추가 비용은 별도 납부

서류 접수 및 검토	선정결과 안내	시험 진행
· (기업) 서류 접수(구글폼) ▼ · (관리원) 서류 검토	▶▶ · (관리원) 선정공문 발송 ▼ · (기업) 선정 여부 확인	▶▶ · (기업) 시험기관에 공문 제출 ▼ · (관리원) 비용정산 및 확인

※ 지정 시험기관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, 한국의류시험연구원(KATRI), FITI시험연구원, KOTITI시험연구원

### 3. 신청 방법

- (접수처)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
- (신청방법) 구글폼을 통한 신청·접수
  -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내 2차 영세기업 지원사업 공지사항 참조
- (제출서류)

구분	연번	제출서류	비고(발급처 등)
필수	1	사업자등록증	정부24 혹은 국세청
	2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정부24 혹은 국세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형①(법인사업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 납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</li> </ul> </li> <li>▶ 유형②(개인사업자이며 공동 대표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대표 모두의 납세증명서 1부</li> <li>- 공동대표 모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</li> </ul> </li> <li>▶ 유형③(개인사업자이며 각자 대표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하는 대표(1인)의 납세증명서 1부</li> <li>- 신청하는 대표(1인)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</li> </ul> </li> </ul>	
		3	중소기업 확인서
	4	시험예정 품목 확인서	지원사업 사전공고 內 양식 (첨부서류 1) · 시험·인증기관을 통한 품목 확인 · 구글폼 내 신청서상 품목과 통일
	5	기업 소개서	지원사업 사전공고 內 양식 (첨부서류 2)
6	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지원사업 사전공고 內 양식 (첨부서류 3)	
선택	7	제조기업 증명서류 (제조기업만 해당)	증빙서류* 제출 (제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	7	※ 증빙서류 : 건축물대장, 공장등록증, 기타 사진(ex. 제조사명이 나와 있는 제품택·상품 라벨 사진, 제조시설이 나와 있는 사진 등) 中 한 가지 이상 제출	
	8	OEM 또는 ODM 계약서 (OEM/ODM 업체만 해당)	증빙서류 제출
	9	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안전확인신고서 (인증기간 연장 희망 기업만 해당)	안전확인신고서 사본 제출

- (선정방법)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
  - 평가점수 동일 시,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- (선정안내) 서류 검토 후,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안내

※ 메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본인 책임으로 간주

#### 4. 유의사항

-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신청서 작성 및 서류누락 등 서류미비의 경우, 선정기업에서 제외
- 사업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경우 선정 제외되며, 후보기업으로 대체 (단,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함)
- 사용기간 내 비용을 모두 미소진했을 시, 잔여액은 이월되지 않음 (사용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약 6주이며, 정확한 기간은 선정공문에 기재)

#### 5. 문의처

구분		전화번호
사업	온라인 문의	안전기반팀 '이메일' 문의(kids@kips.kr)
	사업안내	070 - 5223 - 1402~5
시스템	접수 시스템(구글폼) 이용 관련	070 - 5223 - 1402

- 첨부 1.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 1부
2. 기업소개서 1부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